

특정감사

진정 민원 특정감사 결과보고

-직원 비위행위 진정에 따른 진위조사-

☐ 감사기간: 2015. 9. 9.(수)~2015. 9.10.(목) / 2일간

☐ 감사인원: 2명

☐ 지적사항: 없음

2015. 9.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.....	1
1. 감사배경 및 목적.....	1
2. 감사 대상 및 범위.....	1
3. 감사 중점사항.....	2
4. 감사기간 및 인원.....	2
 II. 진정 내용.....	 2
1. 진정서 이첩 현황.....	2
2. 진정인 및 피진정인.....	3
3. 진정 요지.....	3
 III. 감사 결과.....	 4
1.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 점유.....	4
2. 위장전입.....	5
3. 지적현황측량성과를 인정하지 않음.....	5
4. 지적도를 볼 줄 모르는 직원.....	6
5. 결론.....	7
 IV. 처분요구 및 회신.....	 7
1. 처분요구 사항.....	7
2. 진정에 대한 회신.....	7

1. 감사 배경 및 목적

이번 감사는 □□□□부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에 공사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□□□□부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에서 우리공사로 비위사실 등의 사실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¹⁾이 있었다.

이에 이번 감사는 진정인²⁾이 요구한 피진정인³⁾의 비위행위의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함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감사 대상 및 범위

진정인이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의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「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」 및 「복무규정」 등 공사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공사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·윤리 등의 준수 여부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 하였다.

그리고 수사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⁴⁾에서 처리한 수사결과와 행정처분을 참조하였다.

1)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 대한 비위사실 등 조사 협조요청: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-4723(2015. 8. 24.)

민원이송(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관련):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-4914(2015. 9. 1.)

2) 진정인: 윤□□(피진정인의 삼촌)_☒☒광역시 ●●●구 ○○○○○로 #번길 84-3(□□1동 ###-1)

3) 피진정인: 윤◇◇(한국국토정보공사 ●●지역본부 ☺☺지사 보조인력)

4) 수사기관 등: □□지방법원, ●●☺☺경찰서, ☺☺시청

3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진정인이 □□□□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이 「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」 및 「복무규정」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, 공사 직원으로서 지켜야할 청렴·윤리 등의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4. 감사 기간 및 인원

이번 감사는 2015. 9. 9.부터 같은 해 9. 10.까지 2일간 감사자 2명을 투입하여 피진정인이 조사 요구한 비위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실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하였다.

Ⅱ 진정 내용

1. 진정서 이첩 현황

2015. 8. 18. □□□□부 감사담당관실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, 같은 해 8. 24. □□□□□□□□과에서 우리공사로 “직원 비위사실 조사 협조요청(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-7423)” 되었다. 그 후 진정인이 2015. 9. 1. 추가 진정서를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부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공사로 “민원이송(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과-4914)” 되었다.

2. 진정한 및 피진정한

☒☒광역시 ☒☒진구 ㉠㉠㉠㉠로 14번길 윤□□(이하 “진정한”이라 한다.)은 ○○지역본부 ☺☺지사 보조인력 윤◇◇(이하 “피진정한”이라 한다.)의 삼촌으로 피진정한의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진정을 하였다.

3. 진정 요지

①진정한과 피진정한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○○ ☺☺시 ○○면 ■
■리 #####번지에 피진정한 소유의 같은 리 #####번지 농기계 출입을 위하여
농로를 개설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고 개설
한 농로 중 진정한 소유의 7㎡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. ②또한 피진정
인은 2006년 9월과 2009년 3월 두 차례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하였다.

③그리고 2011. 11. 21.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
를 근거로 ■■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
고,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며, ④■■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등으로
소송 진행 중인 토지⁵⁾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첨부된
도면을 보면 도로의 위치가 지적도에 있는 도로의 위치와 상이하게 작성
되어 있는 등 지적도를 볼 줄 모르는 자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근무할
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.

5) ○○ ☺☺시 ■■리 #####-2번지

1.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 점유

①진정인이 위 토지⁶⁾에 피진정인이 불법으로 농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2015. 1. 6.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어머니(진정인의 형수)를 ☺☺경찰서에 고발하였고, ②☺☺경찰서에서 수사결과 같은 해 3. 6. 피진정인에 대하여 불기소(혐의없음)처분⁷⁾하였으며, ■■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6. 24. 피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약식명령(벌금 1,000,000원)⁸⁾을 하였다. ③이후 피진정인은 ☺☺시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7. 31. ☺☺시청으로부터 임시진입로 개설목적의 개발행위허가⁹⁾를 득하였다. ④또한 같은 토지내 피진정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7㎡에 대하여는 2011년 ■■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은 이후 우리공사에서 측량한 사실¹⁰⁾이 없다.

감사자 의견

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(혐의없음)처분을 받았으며,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.

6)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○○ ☺☺시 ○○면 ■■리 #####번지

7) ○○☺☺경찰서 제2015-00###호, 사건번호 2015-000###, 사건처리결과통지(2015. 3. 6.)

8) ■■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약5####(2015형제9###), 약식명령(2015. 6. 24.)

9) ☺☺시청 윈스톱팀-1#####(2015. 7. 31.)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-일시)허가증 교부

10) ○○ ☺☺시 ○○면 ■■리 #####번지 측량 내역

- ■■지방법원 특현황(2011. 10. 26.)_조정조서에 따른 지분현황
- ■■지방법원 특현황(2012. 12. 5.)_묘지 점유현황

2. 위장전입

①2006. 9. 20. 위장전입 하였다고 주장하는 ○○남도 ☺☺시 ○○읍
◇◇리 580-7번지는 피진정인 소유의 토지로 실제 거주하였고 조사일 현재
거주하고 있는 주소지¹¹⁾와 동일하며, ②2009. 3. 9. 위장전입 하였다고
주장하는 ○○남도 ☺☺시 ●●면 ■■리 1###번지는 피진정인의 본가로서
당시 피진정인의 어머니가 거주하였고 피진정인이 농기계 운전 등 주말에
농사일을 돕기 위해 전입하였다.

③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. 5. 28. ☺☺
경찰서에 고발하였고, 같은 해 6. 26. ☺☺경찰서로 부터 불기소(공소권 없음)
처분¹²⁾을 받았다.

감사자 의견

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(공소권 없음)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위규·부
당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3. 지적현황측량성과를 인정하지 않음

①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¹³⁾에 따라 2011. 11. 26.
■■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☺☺시청에 개발

11) 현재주소(도로명주소): ○○남도 ☺☺시 ○○읍 ○○1길 51

12) ●●☺☺경찰서 제2015-02###호, 사건번호 2015-004###, 사건처리결과통지(2015. 6. 26.)

13) (특)지적현황측량, 측량일자: 2011. 10. 26., 측량자: 대한지적공사 ■■●●본부 ☺☺시지사 김●●

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. 7. 31. ☺☺시청으로부터 임시진입로 개설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은 측량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며, ②진정인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7㎡에 대하여는 위 “1. ④”와 같고, ③피진정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질문서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평소 천성이 근면 성실하고 직원 간 화합이 잘되며 책임감이 강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이라 답변하였다.

감사자 의견

피진정인은 평소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.

4. 지적도를 볼 줄 모르는 직원

①피진정인은 2000년도에 우리공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지적도를 기초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같은 측량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질문서에 따르면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답변하였고, ③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공유물분할 등 소송에 따른 항소이유서에 법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피진정인이 첨부한 약도로서 ④현재 ■■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「청원법」 제5조(청원의 불수리)¹⁴⁾에 해당한다.

14) 청원법 제5조(청원의 불수리) 제1항 제1호: 감사·수사·재판·행정심판·조정·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·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

감사자 의견

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「청원법」 제5조(청원의 불수리)에 따라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결론

본 건은 진정인(피진정인의 삼촌)과 피진정인 간 집안 문제로서 피진정인의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사항으로 감사대상이 아니다.

IV

처분요구 및 회신

1. 처분요구 사항 - 없음

2. 진정에 대한 회신 - 위 “5. 결론”과 같음. 끝.